

漁船行政 一元化와 施策方向

水 產 廳

施設局長 金 應 守

目 次

1. 漁船行政 一元化의 背景
2. 一元化의 內容
3. 一元化後의 問題點과 對策
4. 80年度 施策의 方向

1. 漁船行政 一元化의 背景

漁船行政이라함은 漁船의 需給計劃과 建造支援等 助長行政, 建造한 漁船을 檢査하고 登錄하는 管理行政 漁船建造過程에서 技術的인 指導와 監督을 行하는 技術行政및 船員需給業務等を 總稱하는 것으로서 그동안 이와같은 漁船行政이 多元化 되어 行政 需要者인 漁民의 不便은 莫甚하였던 것이다.

即 水產廳은 漁業生産手段의 基本이 되는 漁船의 需給計劃과 漁船建造, 資金支援等 助長行政을 擔當하여 왔고, 海運港灣廳에서는 漁船의 登錄과 檢査業務等 漁船管理行政과 船員業務를 各己 分掌하게 됨에 따라 漁民의 立場에서 볼때 많은 不便과 隘路가 있었던 것도 事實이었다.

이에 政府는 보다 合理的인 漁船行政과 漁民의 便益을 圖謀하고자 多元化된 漁船行政을 一元化 하기 爲한 作業을 積極的으로 推進하기에 이르렀다.

1970年 1月부터 1971年 12月末 까지 20噸未滿의 漁船登錄과 檢査業務를 交通部에서 引受하고자 한바 있으나 制度未備와 政府의 職制, 地方機構, 人員 豫算 確保難等の 理由로 그 實行을 보

지 못하였으며, 그以後 年例行事처럼 行政改革委員會等の 調查研究等으로 一元化作業을 推進한바 있었다.

1977년에는 水產業界의 強力한 要望에 副應하여 漁船法의 制定을 試圖, 1977, 7, 20 漁業生産力의 增強과 水產業의 合理的인 發展을 圖謀코자 漁船法案을 마련하고 斯界에 對한 公聽會 黨政協議(10.4) 經濟長官 會議(10.6) 國務會議 議決(10.24)을 거쳐 政府案으로 國會에 提出(11, 9) 12月 15日 第99回 定期國會에서 通過 되므로서 1977. 12. 31 法律 第3063號로 漁船法이 公布하게 된것이다.

1978年度에는 同法施行에 必要한 施行令(大統領令 第9198號), 同施行規則(農水產部令 第748號) 및 漁船設備等에 關한 規則(農水產部令 第749號)等を 制定 公布하기에 이르렀고, 1979年 1月 1日부터 漁船法 發效와 同時에 多岐化된 漁船行政이 水產廳으로 一元化되어 漁船行政을 綜合的으로 推進할수 있게 되었고, 漁民의 便益을 圖謀하는데 進一步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船員業務와 漁船建造 承認業務가 當廳으로 移管되지 않은 狀態이나, 이것도 早速히 移管되도록 積極 推進할 方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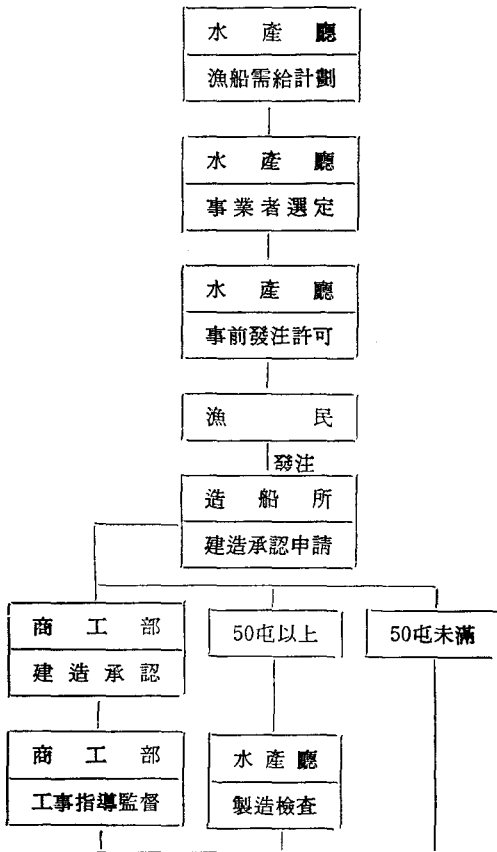
2. 一元化의 內容

그러면 여기서 漁船行政 一元化의 內容을 重點的으로 說明하고자 한다.

가. 漁船 發注體系

現在까지 各部處에서 管掌하고 있던 漁船의 登錄과 檢査業務가 從來 船舶法과 船舶安全法の 適用을 받아 海運港灣廳에서 管掌하던 것을 1979. 1. 1 부터 漁船法の 適用을 받아 水産廳에서 管掌하게 되었고 또한 從來 水産資源保護令에 의거 漁船의 建造, 改造業務가 漁船法에 依據 許可制度로 바뀌게 되었으며 또한 漁船性能 向上을 爲한 試驗研究가 制度的 保障을 받게 되었는데 그 體系를 圖示하면 別表 1과 같다.

[別表 1]



그런데 여기서 問題點으로 台頭된 것은 總屯數 20屯以上の 漁船 建造時 造船工業振興法 第10條의 規定에 依據 商工部長官의 建造承認(造船所 代行)을 得하여야 함으로 節次上 多少 煩雜한 점이 있어 漁船法 第5條의 規定에 依한 漁船 建造, 改造 發注許可를 得하였을 때에는 商工部長官의 建造承認을 省略하고 申告로 갈음할 수 있도록 造船工業振興法の 改正이 所望스러움으로 繼續補完코져 한다.

나. 事前發注許可制度

앞에서도 말한바와 같이 漁民이 漁船을 建造하거나 改造하고자 할 때에는 漁船法 第5條의 規定에 依據 事前에 發注 또는 改造許可를 받도록 하였다. 이것은 無節制한 生産手段을 抑制함으로서 우리나라 沿近海의 水産資源을 効率的으로 開發하고, 資源의 持續的인 再生産力을 保障하기 爲하여 導入한 制度인 것이며 이렇게 함으로서 有限한 沿近海水産資源의 保護는 勿論 建造한 漁船은 即時 漁業許可로 이어지게 되고 나아가서는 漁業調整效果를 通하여 漁民의 收益性을 保障할 수 있게되는 것이다. 이 制度는 앞으로 더욱 發展시켜 우리나라 漁船 漁業의 基盤을 構築하는데 크게 寄與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다. 漁船의 登錄 檢査體系

1) 漁船의 登錄

漁船法上 1屯以上の 無動力船과 全動力漁船의 所有者는 船籍港을 管轄하는 道知事가 備置하는 漁船原簿에 登錄을 하여야 하며 登錄을 하지 않은 船舶은 漁船으로서 使用할수 없으며 20屯以上の 漁船은 船舶登記를 한 後에 登錄을 하도록 規定(法 第9條)하였다.

萬若 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漁船으로 使用할 때에는 船舶法 第29條의 規定에 依하여 處罰을 받도록 規定하고 있어서 반드시 登錄을 한후에 漁船으로 使用하여야 할 것이다.

漁船의 登錄을 하고자 하는 者는 住所地를 管轄하는 市長, 郡守에게 登錄申請을 하도록 하였다. (施行規則 第9條 第12項)) 그런데 從來에는 20屯以上の 漁船은 漁船原簿에 登錄을 하고 船舶國籍證書를 交付받고 5屯以上の 無動力船과 20屯 未滿의 全動力漁船은 船籍原簿에 登錄하고 船籍證書를 交付받도록 하였음에 따라 5屯未滿의 無動力漁船인 境遇는 法的으로 아무런 制度가 없으며 그 正確한 實態를 把握할 수 없는 實情이었으나 漁船法 施行後에는 1屯以上の 無動力船과 全動力船은 登錄을 하도록 規定하고 있어 앞으로는 1屯以上 漁船의 勢力을 正確히 把握 할수 있게 되었다. (別表 2 體系圖參照)

2) 漁船의 檢査

漁船은 海上의 惡天候 속에서 操業하게 되고 人命과 財産을 保護하는 特殊性으로 因하여 高度의 安全性이 維持되어야 함으로 그 安全保障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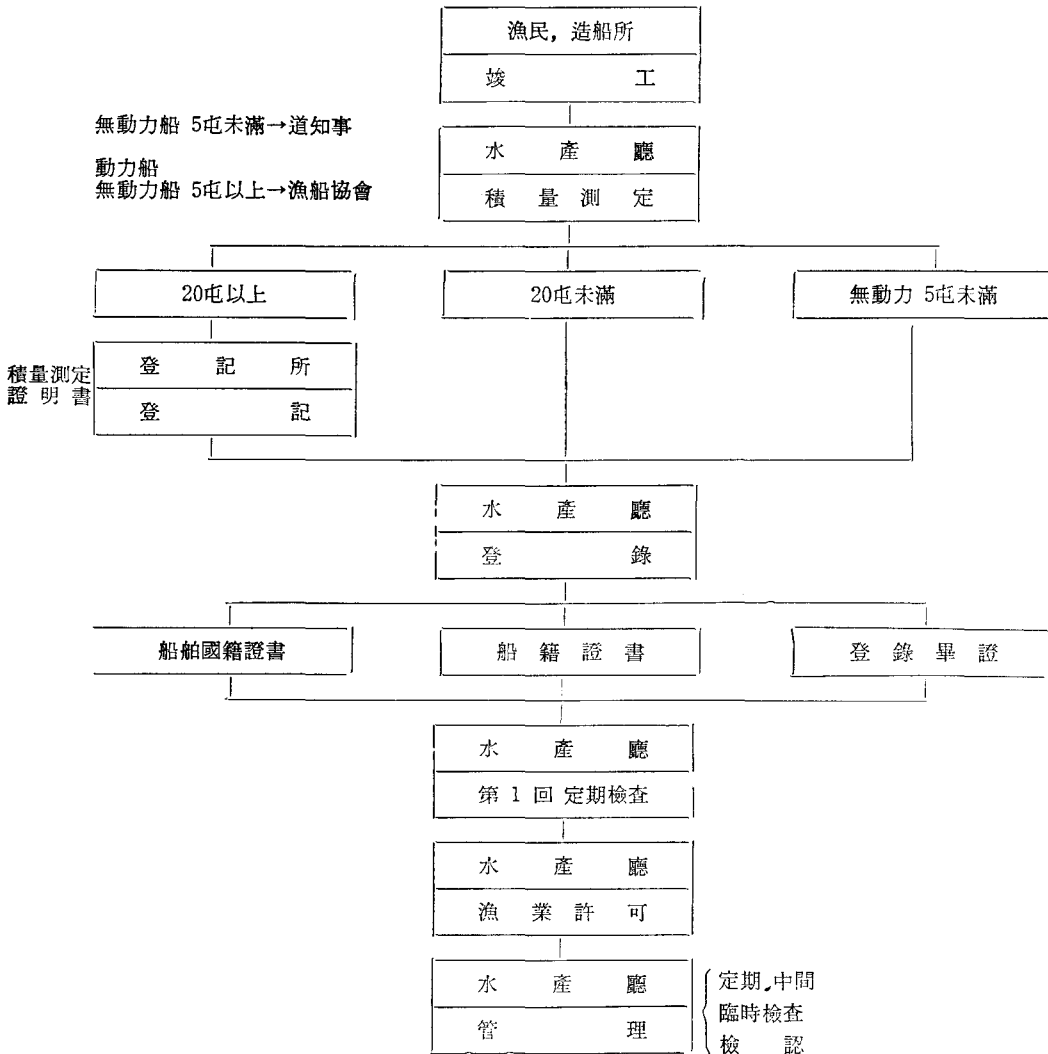
必要的 設備의 設置, 補修, 維持케 함으로서 海上에서의 모든 危險을 事前에 防止하고 操業能率의 向上을 期하기 爲하여 漁船의 檢査는 必須의인 것이다.

따라서 政府는 漁船安全에 必要的 施設과 復原性 滿載吃水線의 指定等 關係規程을 마련하고 定期的으로 漁船의 檢査를 받도록 規定하고 있다.

法施行前까지는 漁船도 船舶安全法에 根據를 두고 政府의 檢査가 施行 되었지만은 漁船法이 施行되면서 漁船法을 根據로 하여 檢査가 執行되게 되며 漁船에 對한 檢査業務는 法 第21條에 依하여 設立되는 韓國漁船協會가 代行하도록 하였는데 이것은 現在까지 政府의 檢査體制에서 民間代行體制로 轉換된 것이다.

(別表 2 體系圖參照)

〈別表 2〉 漁船 登錄, 檢査體系圖



라. 漁船檢査機關

1) 韓國漁船協會의 設立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漁船의 檢査業務의 重要性은 莫重한 것이다.

따라서 有能하고 老練한 技術人力의 確保가

檢査業務의 質의水準을 維持할 수 있는 關鍵인 것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技術人力의 確保는 行政組織의 特殊性으로보아 公務員이 直接 擔當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漁船法 第21條의 規定에 依據 漁船과 그 設備에 關한 政府의 檢査業務를 代行하고 漁船의 性能向上을

爲한 調査研究 및 技術開發 業務를 遂行함으로써 水産業 發展에 寄與케 하고자 1979. 1. 4 “韓國 漁船協會”를 設立하게 되었다.

2) 機能

韓國漁船協會는 그 設立 趣旨와 같이 漁船法 第22條의 規定에 依據 水産廳長 또는 道知事의 漁船檢査業務를 代行하는 것이 그 機能의 大宗을 이루고 있으나 그 重要 機能은 다음과 같다.

○漁船의 檢査, 製造檢査 및 積量測定 滿載吃水線의 指定에 關한 業務代行

○漁船의 船型構造 및 裝備에 關한 研究 및 技術開發

○標準漁船의 設計 審議 普及

○漁船用 材料, 用品 및 機資材의 試驗研究 및 檢査

○漁船의 建造監督 및 鑑定

○會誌 및 漁船에 關한 圖書 發刊

○政府의 委囑事業

○其他 本會의 目的達成에 必要한 事業으로서 水産廳長의 認可를 받은 事業

마. 標準漁船制度의 導入

그동안 漁船을 建造하고자 할때에 實需要者는 各自의 趣向과 意圖대로 建造함으로써 漁業經營의 要諦인 經濟性이 缺如되었음은 勿論, 同一業體間의 規格이 統一 되지않아 建造費의 上昇과 安全性이 確保되지 못하여 漁船行政 推進上 많은 問題點이 提起되어 왔었다. 그래서 漁船行政 一元化를 契機로 標準漁船設計圖를 마련하여 漁船法第5條의 規定에 依한 漁船 建造 改造 發注許可를 得한 漁民에게는 同 設計圖를 實費로 配付하여 장차는 모든 漁船의 新造時에는 이 設計圖에 의하여서만 建造토록 할 方針이다. 이 設計圖 作成을 爲하여 政府는 79年度 事前調査豫備費에서 81,253千원의 豫算을 確保하여 現在 大型機底 120屯級等 12種의 標準漁船 設計圖를 韓國漁船協會에 用役을 주어 設計中에 있다. 同設計가 完成되면 漁船協會에서 自體豫算으로 設計한 業種等을 包含하여 告示한 後 앞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實需要者에게 配付토록 할 方針인 것이다. 이 設計圖는 施行過程에서 導出된 問題點을 土台로 漁船協會의 技術陣을 活用 繼續적으로 改善토록 할 方針이다.

바. 漁船의 從業制限

漁船法施行令 第12條에서 漁船의 從業制限은 第1種, 第2種, 第3種 으로 從事하는 業種을 制限하도록 하였고 各 從業制限別 漁業의 種類는 다음과 같다.

1) 第1種 從業制限

- ① 一本釣漁業
- ② 延繩漁業
- ③ 流刺網漁業
- ④ 小型旋網漁業
- ⑤ 敷網漁業
- ⑥ 海獸漁業
- ⑦ 潛水器 및 海藻漁業
- ⑧ 船引網漁業
- ⑨ 地引網漁業
- ⑩ 鮫縶網漁業
- ⑪ 채낚기漁業
- ⑫ 近海捕鯨漁業(30屯 未滿)
- ⑬ 통발漁業
- ⑭ 형망어업
- ⑮ 上記의 漁業에 準하는 것으로서 水産廳長이 認定하는 漁業

2) 第2種 從業制限

第2種 從業制限을 받은 漁船은 第1種 從業制限漁業에 從事할 수 있다. (令第14條)

- ① 機船底引網漁業
- ② 近海捕鯨漁業(30屯以上)
- ③ 近海트롤漁業
- ④ 大型旋網漁業
- ⑤ 上記의 漁業에 準하는 것으로서 水産廳長이 認定하는 漁業

3) 第3種 從業制限

- ① 遠洋트롤어업
- ② 遠洋母船式漁業
- ③ 遠洋延繩漁業
- ④ 遠洋채낚기漁業
- ⑤ 漁場 및 水産物製造加工場所로 부터 漁獲物 또는 그 製品을 專用으로 運搬하는 漁船
- ⑥ 漁業에 關한 試驗, 調査, 敎習, 또는 指導 監督에 從事하는 漁船.

從業制限은 漁船의 크기 構造 또는 設備等을 基準으로 하여 水産廳長 또는 道知事が 決定(令

第13條)하며 檢査證書의 有効期間內에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變更이 可能하다.

① 不得已한 事由로 因하여 從業制限 漁業以外의 漁業에 從事하게 될때

② 漁業에 使用하지 아니하고 國內沿岸外를 航行하게 될때

사. 漁船의 管理

1) 漁船의 讓受渡

大韓民國 國民이 所有하고 있는 漁船을 外國 또는 外國人에게 讓渡, 貸與하거나 擔保로 提供하고자 할 때와 外國 또는 外國人이 所有하고 있는 漁船을 讓受 또는 備船하고자 할 때에는 水産廳長의 許可를 받아야 하며 外國 또는 外國人으로부터 貸借한 漁船에 對하여는 當該 外國과 特別한 協定이 없는 限 全部 또는 一部를 漁船法の 適用을 받도록 하였다. (法第25條). 이는 現在 海上運送事業法에 依하여 許可를 받고 있는 事項을 漁船法에 根據를 두어 漁船에 對하여는 同 海上運送事業法에 適用을 받지 않도록 한 것이다. 船員을 乘船시키지 않는 漁船의 貸與, 讓渡 擔保提供과 讓受備船(期間備船 除外)의 許可를 받고자 할 때에는 讓受人, 讓渡人의 住所와 國籍 및 姓名(法人의 境遇에는 그 代表者의 國籍 및 姓名도 包含한다) 讓受, 讓渡漁船의 表示를 한 申請書와 다음의 書類를 添付 水産廳長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令第44條)

① 讓受讓渡契約書, 讓渡者가 當該漁船의 所有者이거나 處分을 委託받고 있음을 證明할 수 있는 書類

② 漁船의 國籍證書

③ 事業計劃

이 申請을 받은 水産廳長은 漁業秩序 維持에 適合하고 經濟發展에 寄與할 수 있으며 讓受讓渡의 條件 期間等 基準에 適合할 때에 許可하도록 規定 (令第45條)하고 있다.

賃借漁船에 對하여는 漁船의 施設 現場確認檢査等에 이 法の 全部 또는 一部를 適用한다. (法 第26條 第2項)

2) 所有者가 不明한 漁船等의 管理

所有者를 確認할 수 없는 漁船과 다른 船舶의 入出港, 漁業 其他 公益에 支障이 있다고 認定되는 漁船에 對하여는 다른 法令에 特別한 規定이

없는 限 當該 漁船의 管理 또는 處分에 關하여 水産廳長이 必要한 命令을 할 수 있도록 規定(法第27條)하므로써 港內 沈沒되어 있거나 沈沒直前に 放置되어 있는 漁船으로 因하여 港內 出入港에 支障을 준다든가 줄 때에는 이의 除去, 引揚等 必要한 處分을 할 수 있게 되었다.

3) 責任保險의 加入

5噸 以上の 漁船과 그 船員에 對하여 漁船의 所有者는 반드시 加入하도록 強制規定(法第28條)으로 되어있다. 漁船의 所有者는 그 漁船의 評價額 全額 該當額의 船體保險 또는 共濟에 加入하여야 함은 勿論 船員法 第10章(災害補償)에 規定한 災害를 充分히 補償할 수 있는 金額으로 하되 加入對象人員은 漁船檢査證書에 記載된 最大乘船人員으로 하도록 規定(令第48條)하고 있어 船員의 災害補償制度를 本法에서 定立시켜 貴重한 財産과 人命 被害를 事前에 對備하는 目的으로 制度化시킨 것이다.

3. 一元化後의 問題點과 對策

漁船行政體制가 完全히 갖추어 지지 않은 狀態에서 漁船行政이 當廳으로 移管됨에 따라 처음에는 많은 問題點에 逢着하게 되었다.

漁船法에 對한 漁民의 認識不足은 勿論 檢査執行地와 漁船登錄地가 서로 다름에 따른 漁民의 不便이 莫甚하였고, 檢査人力의 不足과 一線行政機關의 일손 不足等 많은 問題點이 惹起 되었으나, 이의 解決을 爲하여 積極 努力한 結果 다음과같이 多々한 成果를 擧揚하여 이제는 漁船行政 體制가 相當히 갖추어졌다.

첫째 漁船檢査執行地를 大幅 擴大하였다. 過去 海運港灣廳에서는 地方官署에서 登錄과 檢査를 同一機關에서 取扱하였으나, 一元化以後에 登錄은 市郡에서 檢査는 11個 漁船檢査執行地에서 韓國漁船協會에 代行케 함으로서 漁民에게 相當한 不便을 招來하였으나 水産廳 告示 第8號(79. 4. 10)로 東草, 墨湖, 大川, 安興, 蔚山, 長承浦, 西歸浦等 7個所를 大幅擴大 告示하여 漁民의 不便을 除去하였고 特히 忠南 大川에 漁船協會 支部를 新設하였다.

둘째 市郡의 漁船登錄業務가 一時에 輻輳함에 따라 122名의 專擔公務員을 1979. 5. 1부터 配

置하여 人力不足 問題를 解決하였다.

셋째, 이미 制定施行되고 있는 漁船關係 各種 規則이 現實과 多少 符合되지 않는點이 있어 法 運用上 隘路點이 있던것을 漁船法施行規則(農水 產部令 第762號(79. 5. 25))을 改正하여 漁船標 識板 附着要領과 漁船原簿의 移送節次를 簡素化 하였고 登錄이 抹消된 漁船을 漁民의 財產權 保護를 重視하여 新規 登錄節次에 따라 再登錄을 許容토록 하였음은 勿論 小型漁船의 積量測定業 務를 市郡 擔當職員이 職權으로 測定할 수 있도록 簡素化하였고 特히 漁船協會에서 施工監理 를 한 경우에는 製造檢査의 一部를 免除토록 措 置하였다.

넷째 또한 漁船檢査 人力의 不足 問題를 解決 하기 爲하여 “漁船檢査員等에 關한 規則”(農水 產部令 第763號(79. 5. 25))을 改正하여 任用要 件을 緩和하였고

다섯째 漁船檢査手數料 징수상의 不合理한 點 을 是正하거나 過去에 누락되었던 것을 補完하 기 爲하여 農水產部令 第766號(79. 6. 15)로 改 正 告示하여 無動力 小型 漁船의 積量測定手數 料를 免除토록 하였고 各種 手數料의 減免과 누 락된것을 新設 措置하였다.

마지막으로 漁船協會의 自體 運營資金 不足으 로 人力 確保와 協會 運營에 莫基한 支障을 招 來하였던 것을 當初 承認豫算 364百萬元 보다 210百萬元을 增額하는 追更을 編成하였고 追加 所要 財源은 漁船協會에서 設計 用役等 業務遂 行에 依한 自體收入의 増大로 充當토록하였다.

4. 80年度 施策方向

위에서 言及한 바와같이 漁船行政一元化에 따 른 行政體系는 政府의 不斷한 努力으로 이제는 어느 程度 軌道에 進入하였다고 判斷되나 아직 도 改善할 餘地가 많다. 이에 80年度에는 그간의 經驗을 土臺로 劃期的인 施策을 講究하여 보 다 더 漁民의 便益을 圖謀코자 한다.

첫째 韓國漁船協會의 健全 育成을 期 하고자

한다.

韓國漁船協會는 漁船法施行令 第21條의 規定 에의거 漁船檢査業務와 技術開發을 目的으로 19 79. 1. 4 發足한 以來 政府의 支援 未洽等으로 隘路가 많았으나 80年度에는 今年보다 政府補助 金을 306%나 增額된 732百萬元을 支援토록 80 年度 政府豫算에 反映하여 漁船行政의 大宗을 이루고 있는 同協會를 積極育成하여 漁船行政 遂 行의 中樞機關으로 發展 시키고자 한다.

둘째 漁船檢査 行政區域과 一般 行政區域을 一 致시켜 漁民의 便益을 圖謀코자 한다. 即 現在 는 漁船檢査業務를 實施하는 漁船協會의 管轄區 域이 廣域化되어 있음은 勿論 그 명칭이 地域單 位 名稱을 使用 함으로서 多少 混線을 招來하여 漁船協會 支部를 道單位로 改編하여 地方行政機 構와 連繫性을 維持 하도록 할 方針이다.

셋째 檢査에 따른 漁民負擔의 衡平을 期하고 자 한다.

現行 制度上으로는 漁船檢査執行地 以外의 地 域에 居住하는 漁民은 檢査員의 出張旅費와 加 算金(3000원)을 負擔하고 있어 同 執行地內에서 受檢하는 漁民보다 相當額의 超過負擔을 하고 있어 公平負擔의 原理에 符合되지 않음으로 이 를 是正하여 負擔의 衡平을 維持토록 할 方針 이 다.

네째 奉仕體制의 強化

漁船의 登錄과 檢査 그리고 各種 認許可業務 를 遂行하는데 擔當者의 誠實한 奉仕 精神의 高 揚은 勿論 制度的으로도 漁民近接支援 行政體制 를 確保함으로서 一元化業務의 內實化를 期하고 자 하는데 이를 爲하여 擔當者에 對한 教育訓練 을 強化하고 漁船檢査執行地를 大幅擴大 告示하 며 檢査員을 增員하여 駐在員 制度를 活用할 計 劃이다.

다섯째 標準漁船設計의 普及

漁船 建造時 漁民 各者가 設計함에 따른 負擔 過重과 經濟的 漁船建造를 誘導하기 爲하여 現 在 政府에서 用役으로 設計中인 標準漁船設計圖 를 告示하여 漁民에게 實費로 提供코자 한다.